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30
----------	-----

2025. 1. 22.(수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박지현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5년 1월 10일

다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25년 1월 22일

-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박지현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에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신설하고,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일부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에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신설함. (안 제2조)
- 조례에 사용된 “위촉 해제”를 “해촉”으로 변경함. (안 제5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0조제1항9)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에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신설하고,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(법제처)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**안 제2조**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신 하도록 규정한 것임.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0조제1항을 보면, “도에 두는 생활보장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”고 규정되어 있음.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0조제4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위원

9) 9)제20조(생활보장위원회)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·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각각 생활보장 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자격은 △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△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△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으로 규정하고 있고,

- 현재 「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3조제3항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자격을 보면, △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과 △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포함돼 있고, △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·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·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·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등이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음.
- 즉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0조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바,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0조제4항	「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3조제3항
④ 제1항에 따른 시·도 및 시·군·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·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한다. 다만,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. <u>1.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</u> <u>2.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</u> <u>3.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</u>	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u>1.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</u> <u>2.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</u> <u>3.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</u> <u>4.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</u> <u>5.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</u> <u>6. 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」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</u> <u>7.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</u> <u>8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</u> <u>9. 그 밖에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u>

○ 안 제5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(법제처)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용어

중 “위촉 해제”를 “해촉”으로 변경하였고,

○ 안 제3조, 제7조, 제11조는 잘못된 띄어쓰기를 바로잡은 것임.

다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에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신설하고,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일부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타당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.

○ 또한 도 담당부서의 의견수렴 및 조례안예고 등을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

제3조제2항 중 “위원중”을 “위원 중”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위원의 위촉 해제)”를 “(위원의 해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중”을 “위원 중”으로, “해당 하는”을 “해당하는”으로, “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”를 “임기 중이라도 해촉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법 제40조제4항의”를 “법 제40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1회이상”을 “1회 이상”으로, “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”를 “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“하 다고”를 “하다고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사항외”를 “사항 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.
제2조(기능)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 6. (생략)	제2조(기능)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 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제3조(구성) ① (생략)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③ (생략)	제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위원 중----- ----- ----- -----.
제5조(위원의 위촉 해제) 도지사는 위촉 위원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	제5조(위원의 해촉) ----- --- 위원 중----- ---- 해당하는 -----

경우에는 <u>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</u> 할 수 있다.	----- <u>임기 중이라도 해촉</u> ----- -----.
1. (생 략) 2. <u>법 제40조제4항</u>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 될 때 3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 2. <u>법 제40조제4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
제7조(회의 및 의사) ①·② (생 략) ③ 정기회는 연 <u>1회이상</u>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의원 3분의 <u>1이상의</u> 소집요구가 있을때 개최한다.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개최일 5일 전에 회의 일시·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 <u>하 다</u> <u>고</u>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⑤ (생 략)	제7조(회의 및 의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1회 이상</u> ----- ----- ----- <u>1 이상</u> <u>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</u> -----.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하다고</u> ----- ----- ⑤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<u>사항외</u> 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	제11조(운영세칙) ----- <u>사항 외</u> ----- ----- -----.

관계법령

□ 국민기초생활보장법

제20조(생활보장위원회)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·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

제29조(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) ① 시·도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<개정 2015. 4. 20.>

1. 시·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·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
3.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한 사항
4.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